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8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현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,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, 조례 제명 변경 및 조항 내 단어수정 (조례안 제1조, 제3조, 제8조)

- (현행) 제명 중 “운영” 조례 ” → (개정) “운용” 조례
-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8년 12월 31일
- (현행) 운영, 담당 → (개정) 운용, 팀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3. 9. 20. ~ 2023. 10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비규제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”을 “운용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담당으로”를 “팀장으로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	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운용-- ---------- ---.
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,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. ② (생 략)	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팀장으로 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8조(존속기한) ---------- ---- 2028년 12월 31일------ 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**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**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: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 :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장 신 미 진
연락처	(033) 330 - 2150